

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3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. 1시행)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정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”로 변경(안 제1조)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1조를 제26조로 변경(안 제2조, 별지 제2·4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4. 25~ 5. 15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제21조의” 를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제26조”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영 제21조제1항” 을 “영 제26조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”를 “
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26조----- ----- ----- |
| 제2조 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(생 략) 1.~3. (생략) | 제2조 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영 제26조----- ----- ----- ---- ②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|